

급여이용 정보제공

1. 사랑방요양시설 운영 규정

1)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주)사랑방요양원	장기요양 기관 기호	1-41460-00333
기관유형	노인 의료 복지시설	지정 일자	2012.04.01
전화번호	031-8005-5858,5833	fax	031-8005-5301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4로 7 D타운 6,8층	주소	http://www.sarangbangcare.co.kr/
급여의종류	시설급여	소유현황	자가

2) 입소 계약 - 계약서 및 자세한 운영 규정 참조 -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사랑방요양시설 상담원 : 고은영 (T. 031-8005-5858)

3)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 입소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사랑방노인요양원 입소자가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① 사랑방노인요양원 모든 직원에게 긴급 연락 조치 후 연계 병원과 연결한다.
- ② 입소자의 법적 대리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4) 사랑방노인요양원 시설물 사용 상 주의사항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께서(직원포함)는 시설의 파손, 분실,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종사자 근무 체계

1) 직종별 직원 배치 인력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2명, 조리사 1명)

직 종 별	직 원 배 치	비 고
간호조무사	1명	휴무일 경우 간호업무 대체 :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	휴무일 경우 복지업무 대체 :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주간조(3~4명)오후조(2명)야간조(2명)	매일근무
조리사	1명	휴무일 경우 대체 : 당일 휴무 요양보호사

2)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1.2.3.4.5등급)

- ① 신체활동 지원
- ② 인지관리 및 정서지원
- ③ 건강관리 및 간호처치
- ④ 기능회복훈련
- ⑤ 기타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식사재료비 : 1식 당 3,500원 - 간식비 : 1일 2,000원 - 요양등급 비등급자 실비 - 상급침실료 1일 10,000원(운영규정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3. 시설의 설비 및 규모

구분	침실	특별실	사무실	요양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세면장 및 목욕실	화장실	세탁실
	8	1	1	1	1	1	1	1	1	1	4	1

1) 시설 설비

[침실]

- (1)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함. (현재 남실 2개, 여실 6개, 특별실 1개)
- (2)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임. (현재 구법 장기시설 면적 적용대상임)
- (3)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임.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은 내수 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임.

[세면장 및 목욕실]

-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함.
- (2) 목욕은 목욕 의자와 목욕 휠체어, 목욕 침대를 이용하며 세면장과 목욕실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함

[의료 및 간호사실]

- (1)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
- (2) 의료기구 : 산소발생기 2개, 소독기 1개, 썬건기 4개 등

[그 밖의 시설]

-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고,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2)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함.
- (3)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 장치를 설치함.

2) 규모

- (1) 주소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7 MD타운 6층 (동백주민센터 인근)
- (2) 규모 : 건평 651 m² / 8층 중 6, 8(운동실)층 사용

3) 설비

- (1)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설비
- (2)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3) 완강기, 구조대 각 1개

4.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1) 보 험 명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 2) 계약번호 : FA20251799892000
- 3) 보험기간 : 2025년 03월 31일 00시부터 ~ 2026년 03월 31일 00시까지
- 4) 보험회사 : 한화손해보험
- 5) 보 험 료 : 2,788,000원

5. 화재보험 가입 여부

- 1) 보 험 명 : F-2025-0208289
- 2) 계약번호 : F-2024-0166932
- 3) 보험기간 : 2024년 4월09일 16시부터 ~ 2025년 4월 09일 16시까지
- 4)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5) 보 험 료 : 57,700원

6. 사랑방요양원 월 입소 비용 (30, 31일) 25년 수가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30, 31일)		식비(30,31)	총액(30, 31일)
1	90,450	20%	542,700	560,790	375,000원 (20%)917,700/948,290원
2	83,910	12%	325,620	336,480	
3~5	79,240	08%	217,080	224,320	387,500원 (08%)592,080/611,820원
		20%	503,460	520,250	375,000원 (20%)878,460/907,750원
		12%	302,080	312,150	
		08%	201,390	208,100	387,500원 (08%)576,390/595,600원
		20%	475,440	491,290	375,000원 (20%)850,440/878,790원
		12%	285,270	294,780	
		08%	190,180	196,520	387,500원 (08%)565,180/584,020원

7. 월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1 주	인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C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A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B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2 주	인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C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A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B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3 주	인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C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A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B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4 주	인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C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A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B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5 주	인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인지프로그램 C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A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A그룹 시간:10:00~11:00 신체프로그램 B그룹 15:30~16:00	여가프로그램 B그룹 시간:10:00~11:00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세부 일정은 월간 프로그램 일정표 참조)					

8. 최종 장기요양 기관 평가 결과

2021년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A

운영규정 개요

제10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 입소정원은 26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미만의 장기요양 등급자 부양가족의 사정(여행, 휴가, 질병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 상의 후 용인시장의 입소 결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장기요양지정서 및 용인시장의 입소허가서(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진단서 및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소 계약 사항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2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9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 입소정원은 26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미만의 장기요양 등급자 부양가족의 사정(여행, 휴가, 질병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으로 한다.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 상의 후 용인시장의 입소 결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장기요양지정서 및 용인시장의 입소허가서(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진단서 및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소자 처우)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3. 모집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12조(입.퇴소) 1. 원장은 시설거주자의 입.퇴소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호자 및 입소자와 상담을

하고 결정한다.

2. 시설입소 예정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분증 및 감염병(감염병관련 의사소견서첨부시 감염병진단서로대체가능) 결과지를 지참하고 입소해야한다.

3. 퇴소결정은 질병으로 인해 시설에서 더 이상 돌보기 어렵거나 요양비 3개월이상 체납시, 보호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보호자간담회) 1. 원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간담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입소 어르신의 보호자가 1/3미만 참여할 경우 대면회의 대신 소식지나 SNS로 대체한다)

2. 보호자간담회는 입소자 및 보호자로 구성하며, 매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3. 보호자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 ①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③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4. 원장은 보호자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 노인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진단 및 관리) 1. 원장은 시설 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급식위생관리) 1. 원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식단위탁가능)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 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시설에서의 기거자) 1. 원장은 시설내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원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 하지 못한다.

제17조(실비입소) 1. 시설에는 무료 입소자 외에 실비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2. 실비입소자의 자격과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며, 입소비용은 매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 비용수납한도액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 소요되는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와 개인이 원하는 물품 구입비 외 비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

납할 수 있다.

3. 실비입소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입소신청이나 시장의 입소위탁에 의하여 입소하며,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 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입소자에 준하되 비용은 별도 기준에 의한다.

제18조(장례절차) 1. 원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2. 무연고자의 시신처리는 사망 확인→ 장례식장이송→만 하루 경과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5.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유류금품 처리) 1.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병원입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제3항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각서 징구 등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임)

제20조(건의함 설치 등) 원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보호자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 제20조는 고충처리지침 참고)

제21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매년 급여수가 변동에 의한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안내문으로 대신한다.(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후 입소 결정을 하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호자에게 드리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잔존기능의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②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설"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3. 입소비 납부 방법

① 입소비는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제로 납부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매 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수가에 따

라 변동된다.)

① 월 이용료 : 본인부담금 20%, 8%, 12%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30, 31일)		
1등급	20%	542,700	560,790
	12%	325,620	336,480
	08%	217,080	224,320
2등급	20%	503,460	520,250
	12%	302,080	312,150
	08%	201,390	208,100
3,4,5등급	20%	475,440	491,290
	12%	285,270	294,780
	08%	190,180	196,520

② 기타 비용 부담액 : 비급여 30일 / 31일 37,500원 387,500원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역
식사재료비	1일 / 10,500원	1식 3,500원 × 하루 3회
간식	1일 / 2,000원	매일 2회
이미용비	1당 / 0원	개인 요구 시 별도

제2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 권리

① 입소자 및 보호자의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제23조(퇴소 및 계약의 해제)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시설장, 간호사, 복지사)과 상의후 결정한다.

제24조(퇴소 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입소비 반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하고 당일까지의 금액을 제한 입소비 차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10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할 때
2. 입소자가 본원 또는 병원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외박 중 사망하였을 때
3. 다른 시설이나 다른 지역 시설로 전원하고자 할 때
4. 건강이 호전되어 집으로 퇴소하고자 할 때

제26조(이용료 및 비용변경방법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절차: 변경 일주일전 변경내용 통보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27조 (서비스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단 질환에 따라 매월 투약하는 약값은 입소비와 별도로 계산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 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연 1회 감염병 검진 및 기본검사(비용은 별도 부담한다.)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제2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3~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입소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감염질환 및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실)이나 2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실) 또는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실 및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2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스마일실버의원)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3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입소자는 소지물품 중 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는 난방제품 소지는 불가한다.

제3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배상책임보험 외 보험 가입여부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한화손해보험]

- 증권번호 : FA20251799892000
- 보험기간 : 2025년 03월 31일 00시부터 ~ 2026년 03월 31일 00시까지
- 총보험료 : 2,788,000원

② **화재보험** 가입 [현대해상화재보험]

- 증권번호 : F-2025-0208289
- 보험기간 : 2025년 04월 09일 16시부터 ~ 2026년 04월 09일 16시까지
- 총보험료 : 57,700원

* 개정일 2025. 03. 28 (2025년 보험가입에 의함)